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4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감사관의 1개 담당관과 재외동포영사실의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외교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문화교류협력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10. ~ 2.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제3호 중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 협의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환인도양연합(IORA)과”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환인도양연합(IORA) 등 서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협의체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 정상회의 등 각종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

5. 서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협의체와의 협력과 관련 정세에 관한 조사·연구

6. 한-PIF 협력기금 사업 심의·조정

제28조제2항 중 “에너지과학외교과”를 “에너지과학외교과·국제기술규범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후변화외교과장”을 “국제기술규범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며, 기후변화외교과장”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281명”을 “282명”으로, “121명”을 “122명”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문화교류협력과장”을 “디지털공공외교과장”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별표 1 중 행정서기보 “28”을 “31”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5”를 “42”로 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서기보 “28”을 “31”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5”를 “42”로 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1) 및 2)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호3)부터 12)까지를 각각 1)부터 10)까지로 한다.

별표 6 중 “(제39조 관련)”을 “(제39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별표 7]

대한민국재외공관 한시정원표(제39조제2항 관련)

총 계	1
외무공무원 계	1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① ~ ⑦ (생 락) ⑧ 아태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2. 삭 제 3. <u>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 RC),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 국간 협의체, 태평양도서국포 럼(PIF), 환인도양연합(IORA) 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u> 4. <u>서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u> <u><신 설></u> <u><신 설></u>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3. ----- ---- <u>태평양도서국포럼(PIF), 환인도양연합(IORA) 등 서남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협의 체와</u> ----- ----- 4. <u>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 정상회의 등 각종 협의체 운 영에 관한 업무</u> 5. <u>서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협의체와의 협력과 관련 정세 에 관한 조사 · 연구</u> 6. <u>한-PIF 협력기금 사업 심의 · 조정</u>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생 락) ② <u>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u>에너지 과학외교과 · 기후변화외교과</u> 및 녹색환경외교과를 둔다.</u>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u>에너지 과학외교과 · 국제기술규범과</u> ----- -----.

③ 에너지과학외교과장 및 녹색
환경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
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
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
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고,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외무
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
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9등급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생략)

⑤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81명(9등급 24명, 8등급 31
명, 7등급 9명, 5등급·6등급 96
명, 3등급·4등급 121명)은 임
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정책홍보담당관, 전략조정담
당관, 국제법규과장, 문화교류
협력과장, 지역경제기구과장,

③ -----

---- 국제기술규범과장은 외무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며, 기
후변화외교과장-----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282명-----

----- 122명-----

-----.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디지털공
공외교과장-----

유럽경제외교과장, 녹색환경외교과장 및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9조(한시정원) (생략) <u><신설></u>	----- ----- ----- -----. 제39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u>28</u>		<u>31</u>	+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5</u>		<u>42</u>	-3	
		•		•	•		
		•		•	•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u>28</u>	<u>31</u>	+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5</u>	<u>42</u>	-3
•	•	•	
•	•	•	